

의안번호	2200808
의 퇴 인	서영석 의원
회 답 일	2024. 8. 8.
추 계 번호	24C12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2,930억원(연평균 6,58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2,297	6,399	6,381	4,183	19,259	3,85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제63조의2)	79	1,850	3,545	3,890	4,306	13,670	2,734
총 추가재정소요	79	4,147	9,944	10,271	8,489	32,930	6,5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병역 의무를 마친 날에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를 얻은 때에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2년 추가 산입 ※(현행) 최대 1년 추가 산입	의무규정
5	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및 부칙 제2조	노령연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2에 대한 추계 곤란으로 개정안 시행 시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기와 그 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
2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추가 산입기간을 알 수 없음
4	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현 시점에서는 1년 이상 실업크레딧을 수급할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와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5	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및 부칙 제2조	○	○ 2022~2023년 실적치 추세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 추계한 재정소요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발생하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안 제19조, 제19조의2, 제3조의2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¹⁾)

- (안 제19조) 출산 시 추가 산입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녀당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19조제1항은 출산 시 추가 산입해 줄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기간을 추정하기 곤란
- (안 제19조의2)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산입해 줄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원자 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기간 상한 조정 시 1년 이상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사람의 수와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현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을 지급하되, 한 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 개정안 시행 시, 반복 구직급여 수급에 따라 실업크레딧 수급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수와 생애 구직급여 수급 기간 및 그 시점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표 2]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지급 기간

구 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주: 1.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적용

2. 연령은 퇴사 당시의 연령 기준

3.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 (안 제3조의2) 안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대한 추계가 곤란하여 개정안 시행 시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시기와 그 필요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

1)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 내에서의 재원 변경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18조에 대하여 본 추계서는 병역의무 완료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출산·입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참고로,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
 - －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된 추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개정안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 시 추가 산입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서 병역의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병역의무 완료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서 출산·입양 시점으로 변경)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 참고로,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 －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²⁾

[표 3]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 크레딧 제도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추가 산입기간	6개월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
추가 산입 시점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 * 노령연금액 계산 시 연금산식에 반영	병역의무 완료 시점 * 해당 보험료를 지원
추가 산입기간에 인정소득액	국민연금 A값의 50%	유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³⁾ 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⁴⁾,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자와 2021년에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함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 입대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1.9만명⁵⁾)를 더한 후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8%)을 산출하여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⁶⁾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2)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된 추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음

3)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4)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5) 병무청 제출자료

6)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보험료율)를 적용한 후 해당 금액의 50%를 적용

[표 5]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A)	3,322	3,446	3,575	3,707	3,842
보험료 지원 단가($A \times 9\% \times 50\%$)	149	155	161	167	173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이며 2027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9개월 지원 기간 중 6.9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6]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5	214,737	214,737 (6.9개월)	214,737 (12개월)				
2026	202,539		202,539 (6.9개월)	202,539 (12개월)			
2027	201,484			201,484 (6.9개월)	201,484 (12개월)		
2028	186,609				186,609 (6.9개월)	186,609 (12개월)	
2029	182,138					182,138 (6.9개월)	182,138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9,259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 (안 제18조)	-	2,297	6,399	6,381	4,183	19,259	3,8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안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증액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 개정안 부칙은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을 기준으로 동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

[표 8] 개정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개요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 금액	월 감액금액	유효 기간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2025년 6월 30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2026년 6월 30일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2026년 12월 31일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2027년 6월 30일

주: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감액 금액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1/3을 초과하는 사람들

[표 9] 개정안에 따른 감액 금액 변화

구 분	실제 감액 금액	
	현행	개정안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이하 (이하 'A그룹')	감액 금액 적용	감액 금액 적용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초과 1/2 이하 (이하 'B그룹')	감액 금액 적용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감액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2 초과 (이하 'C그룹')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감액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가재정소요는 폐지 단계별로 현행 제도가 적용될 경우의 총 감액 금액에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의 총 감액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 연도별 총재정소요 = 구간별 감액 적용자 수 × 현행 제도 및 개정안에 따른
구간별 감액 금액 차이 × 회계연도 내 적용 개월 수

□ 2022~2023년의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자 수 및 이들의 감액 전 평균 노령연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2023년은 신규로 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코호트가 없는 해⁷⁾로
2022~2023년의 추이가 통상적인 추이와 다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국
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2022~2023년에
한정되므로 이 추이를 활용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정산 등으로
인해 급여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동되
므로, 2021년 이전에 대한 자료는 과거 발체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공식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여 제출이 어려움

7)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적용연령

구 분	1952년생 이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도달 연도)	(~2012년)	(2014~2017년)	(2019~2022년)	(2024~2027년)	(2029~2032년)	(2034년~)

[표 1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A값 초과소득월액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100만원 미만	60,934	0	0	51,117	0	0	-16.1	0.0	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894	387	47	22,472	250	38	-13.2	-35.4	-19.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306	1,410	809	9,971	1,102	624	-3.3	-21.8	-22.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131	1,655	1,704	2,887	1,345	1,294	-7.8	-18.7	-24.1
400만원 이상	489	1,750	19,458	573	1,858	17,268	17.2	6.2	-11.3

주: 'A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이하, 'B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초과 1/2 이하, 'C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2 초과인 사람들을 지칭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적용자의 평균 노령연금액 추이

(단위: 천원, %)

A값 초과소득월액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100만원 미만	972	0	0	1,050	0	0	8.1	0.0	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80	310	229	1,167	318	218	8.0	2.7	-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61	552	357	1,337	558	377	6.0	1.0	5.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15	947	550	1,589	987	579	4.9	4.3	5.2
400만원 이상	1,782	1,534	1,093	1,887	1,631	1,176	5.9	6.3	7.6

주: 'A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이하, 'B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3 초과 1/2 이하, 'C그룹'은 상한 적용 전 감액 금액이 감액 전 노령연금액의 1/2 초과인 사람들을 지칭(본 표는 해당 사람들의 평균 노령연금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가재정소요 추정 시 B그룹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감액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역시 2022~2023년 B그룹에 대한 평균 감액 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표 13] B그룹의 실제 감액 금액 추이

(단위: 천원, %)

A값 초과소득월액	B그룹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
100만원 미만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21	1,236	1.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228	2,257	1.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874	4,044	4.4
400만원 이상	6,511	7,023	7.9

- 2022~2023년 해당 추이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이상자들에 대하여 2026년부터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4] A값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추가재정소요 발생 시점

A값 초과소득월액	개정안에 따른 현행법 유효기간	추가재정소요 발생 시점
100만원 미만	2025년 6월 30일	개정안에 따라 감액 금액이 변화하는 B그룹과 C그룹에 해당자가 없으므로 유효기간 후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2026년부터 B그룹과 C그룹에 대한 총 감액 금액만큼 추가재정 소요 발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26년 6월 30일	2026년 7월부터 B그룹과 C그룹에 대한 총 감액 금액만큼 추가 재정소요 발생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26년 12월 31일	2027년부터 B그룹과 C그룹에 대한 총 감액 금액만큼 추가재정 소요 발생
400만원 이상	2027년 6월 30일	2027년 7월부터 B그룹과 C그룹에 대한 총 감액 금액만큼 추가 재정소요 발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670억원으로 추계됨

[표 1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제63조의2)	79	1,850	3,545	3,890	4,306	13,670	2,7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군복무크레딧에 대하여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